

알레르기 유발 물질

신고 규정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식품 알레르기는 호주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호주는 세계에서 알레르기 발생률이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합니다. NSW 지역에만 어린이 20명 중 1명, 성인 100명 중 2명이 식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식품 산업은 식품 알레르기 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고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식품 제조업체와 소매업체 및 수입업체들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 신고에 관한 의무를 인지하도록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 신고 의무

식품 제조업체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뜻하지 않게 식품에 함유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식품 소매업체는 식품 알레르기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식품 소매업체는 식품 메뉴 품목에 직간접적으로 포함될지 모를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의 메뉴 선택을 도와야 합니다.

수입업체는 수입품에 라벨이 제대로 표기되었는지 확인하고, 알레르기 유발 물질 함유 상태에 대해 분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식품 표준 규정 준수

모든 식품업체는 다음에 명시된 식품 표준 규정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표준 제 1.2.3 조 필수 경고문과 권고문 및 신고 사항

식품 표준 규정에 따르면, NSW의 모든 식품업체는 포장된 식품의 라벨에 아래와 같이 가장 일반적인 8개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 땅콩
- 나무 견과류
- 계란
- 우유
- 생선
- 감각류

- 깨
- 대두

글루텐과 아황산염도 포장된 식품의 라벨에 반드시 표기되어야 합니다.

식품업체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라벨에 정확한 정보를 표기하고, 업소 내에서 생산한 미포장 식품을 판매하는 직원은 고객이 요구할 때 정확한 제품 정보를 제공합니다.
-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특별히 요청된 식품에서 알레르기 항원이 발견되지 않아야 합니다.

알레르기 항원 관리 주요 사항

제조업체와 소매업체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효과적인 알레르기 유발 물질 관리 계획을 실행합니다
- 식품 알레르기 항원의 위험과 관리 및 커뮤니케이션에 관해 직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 제품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 함유 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합니다.
- 의도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식품 함유를 관리합니다.

수입업체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수입 제품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 함유 상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합니다.
- 수입 제품의 라벨 표기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해외 공급사에 호주 뉴질랜드식품 표준 규정의 라벨 표기 요건에 대해 알려줍니다

자세한 정보

- NSW 식품청 웹사이트 참조:
www.foodauthority.nsw.gov.au
- 전화 상담 서비스: 1300 552 406
- 표준 제 1.2.3 조 필수 경고문과 권고문 및 신고 사항:
www.comlaw.gov.au/Details/F2011C00610
- 사용자 지침서 - 표준 제 1.2.3 조 필수 경고문과 권고문 및 신고 사항:
www.foodstandards.gov.au/code/userguide/pages/warningandadvisoryde1403.aspx
- 식품 표준 규정(식품 알레르기 및 과민증-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 포털):
www.foodstandards.gov.au/consumer/foodallergies/foodallergenportal/Pages/default.aspx

About the NSW Food Authority: The NSW Food Authority is the government organisation that helps ensure NSW food is safe and correctly labelled. It works with consumers, industry and other government organisations to minimise food poisoning by providing information about and regulating the safe production, storage, transport, promotion and preparation of food.

Note: This information is a general summary and cannot cover all situations. Food businesses are required to comply with all of the provisions of the Food Standards Code and the *Food Act 2003* (NSW).



Department of
Primary Industries
Food Authority

6 Avenue of the Americas, Newington NSW 2127
PO Box 6682, Silverwater NSW 1811
T 1300 552 406
contact@foodauthority.nsw.gov.au
ABN 47 080 404 416

More resources at foodauthority.nsw.gov.au



nswfoodauthority



nswfoodauth

Declaring allergens, November 2015
NSW/FA/FI204/1511-Korean